조선 관직 품계표(朝鮮官職品階表)(其一)

종친(宗親)、종친처(宗親妻)、의빈(儀賓) 各 從一品 이하는 (高宗二年)부터 그 품계의 칭호(稱號)가 일반문관(一般文官)·무관처(武官妻)의 칭호와 동일하게 되었다。(其二 참조) 一八六五年

品階 / 區分		無品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堂上)	正三品(堂下)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內命婦	王宮	嬪빈	嬪빈	貴귀 人인	昭소 儀의	淑숙 儀의	昭소 容용		淑숙 容용	昭소 儀의	淑숙 媛원
	世子					良양 娣제			良양 媛원		承승 徽휘
外命婦①(宗親妻)	宗親	大대 王왕 子자 君군	君군 顯현 祿록 大대 夫부 興흥 祿록 大대 夫부 君군 后후 期기 上상 輔보 國국	昭소 德덕 大대 夫부 君군 (綏수 德덕) 后후 改개 嘉가 德덕 大대 夫부	承승 憲헌 大대 夫부 君군	正정 義의 大대 夫부 中중 義의 大대 夫부 君군 昭소 義의 后후 改개	彰창 善선 大대 夫부 都도 正정 旌정 善선 大대 夫부	資자 信신 大대 夫부 副부 正정	光광 成성 大대 夫부 奉봉 正정	廣광 徽휘 大대 夫부 守수	光광 成성 大대 夫부 副부
外命婦②(宗親妻)	外命婦	翁옹 主주	主주		主주	縣현 主주					
儀賓			尉위 成성 祿록 大대 夫부 綏수 祿록 大대 夫부 后후 期기 上상 輔보 國국	尉위 (靖정 德덕) 后후 改개 崇숭 德덕 大대 夫부 (明명 德덕) 后후 改개	尉위 奉봉 憲헌 大대 夫부 通통 憲헌 大대 夫부	尉위 資자 義의 大대 夫부 順순 義의 大대 夫부	副부 尉위 奉봉 順순 大대 夫부 僉첨 尉위 正정 順순 大대 夫부	僉첨 尉위 明명 信신 大대 夫부 敦돈 信신 大대 夫부	僉첨 尉위 明명 信신 大대 夫부		

品階 / 區分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內命婦	王宮	以이 下하 皆개 宮궁 尙상 宮궁 儀의	尙상 服복 食식	尙상 寢침 寢공	尙상 正정 記기	典전 儀의 膳선	典전 設설 製제 言언	典전 式식 贊찬 飾식 藥약	典전 彩채 燈등 正정
	世子	人인 職직	昭소 訓훈		以이 下하 皆개 宮궁 守수 令령 閫윤 守수 則칙	賓빈	掌장 饌찬 正정	掌장 書서 縫봉	掌장
宗親		令령 秉병 直직 郎랑 通통 直직 郎랑	副부 令령 愼신 節절 郎랑 謹근 節절 郎랑	監감 從종 順순 郎랑 執집 順순 郎랑	人인 職직				
外命婦①(宗親妻)	外命婦	溫온 人인	順순 人인	順순 人인					
外命婦②									
儀賓									

(其二 참조)

참고(參考)(경국대전(經國大典))

區分 \ 品階	內命婦 왕비	內命婦 세자	宗親	外命婦①(종친처)(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正九品	奏주奏주奏주奏주 角각商상宮궁					

왕자(적)……(대군)(무계)
王子(嫡)……(大君)(無階)
〃(서)……(군)(무계)
〃(庶)……(君)(無階)
왕녀(적)……(공주)(무계)
王女(嫡)……(公主)(無階)
〃(서)……(옹주)(무계)
〃(庶)……(翁主)(無階)
왕세자의 자(적)……(군)(초수)(정2)
王世子의 子(嫡)……(君)(初授)(正二)
〃(서)……(군)(초수)(정2)
〃(庶)……(君)(初授)(正二)
왕세자의 녀(적)……(군주)(정2)
王世子의 女(嫡)……(郡主)(正二)
〃(서)……(현주)(정3)
〃(庶)……(縣主)(正三)

대군의 배우자…「부부인」(정1)
大君의 配偶者…「府夫人」(正一)
왕자군의 배우자…「군부인」(정1)
王子君의 配偶者…「郡夫人」(正一)
공주의 배우자…초수「위」(종1)
公主의 配偶者…初授「尉」(從一)
옹주의 배우자…「위」(종2)
翁主의 配偶者…〃「尉」(從二)

군의 배우자…〃「현부인」(정2)
君의 配偶者…〃「縣夫人」(正二)
군주의 배우자…〃「부위」(정3)
郡主의 配偶者…〃「副尉」(正三)
현주의 배우자…〃「첨위」(정·종3)
縣主의 配偶者…〃「僉尉」(正·從三)

기타(其他)의 종친(宗親)

區分 \ 品階	內命婦 왕비	內命婦 세자	宗親	外命婦①(종친처)(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從九品	奏주奏주奏주奏주 變변　變변 徵징羽우宮궁徵징	掌장掌장掌장 醫의食식歲세				

일품「군」
一品「君」
이품「군」
二品「君」
정삼품「도정」
正三品「都正」
「정」
「正」
종삼품「부정」
從三品「副正」
정사품「수」
正四品「守」
종사품「부수」
從四品「副守」
정오품「령」
正五品「令」
종오품「부령」
從五品「副令」
정육품「감」
正六品「監」

그 배우자「부부인」
그 配偶者「府夫人」
그 배우자「현부인」
그 配偶者「縣夫人」
당상 삼품종친의 배우자「신부인」
堂上 三品宗親의 配偶者「愼夫人」
당하 삼품종친의 배우자「신인」
堂下 三品宗親의 配偶者「愼人」

그 배우자「혜인」
그 配偶者「惠人」

그 배우자「온인」
그 配偶者「溫人」

그 배우자「순인」
그 配偶者「順人」

왕비의 부「부원군」(정1)
王妃의 父「府院君」(正一)
친공신「부원군」(정1)
親功臣「府院君」(正一)
「군」(종1·종2)
「君」(從一·從二)

그 배우자「부부인」(정1)
그 配偶者「府夫人」(正一)
그 배우자「정경부인」(정1)
그 配偶者「貞敬夫人」(正一)
그 배우자 종일품…「정경부인」
그 配偶者 從一品…「貞敬夫人」
종이품…「정부인」
從二品…「貞夫人」

※이 가운데 부원군(府院君)·군(君)과 3품(三品) 이하(以下)의 종친(宗親)、의빈(儀賓) 그리고 왕비모(王妃母)、세자녀(世子女)、종친(宗親) 2품(二品) 이상(以上)의 처(妻)는 「임호(邑號)」라 하여 그 출신과계(出身關係)의 지명(地名) 등(等)을 붙여 호칭(呼稱)하는 일이 많았다。(예(例) 예종비(睿宗妃)의 부(父) 한명회(韓明澮)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예종 녀(睿宗 女) 현숙공주(顯肅公主)의 부마(駙馬) 임광재(任光載)는 풍천위(豊川尉)、이들 종친(宗親)을 위해서는 「종친부(宗親府)」 친공신(親功臣)을 위해서는 「충훈부(忠勳府)」(처음에는 공신도감(功臣都監) 충훈사(忠勳司))、공주(公主) 옹주(翁主)에 상응(尙-장가듦)한 자(者)를 위해서는 「의빈부(儀賓府)」를 두었고、또 이보다 원소(遠疎)한 왕친(王親) 외척(外戚)에도 범위(範圍)를 정(定)하여 정일품(正一品) 아문(衙門)의 「돈녕부(敦寧府)」를 두었다。또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위해서는 종이품(從二品) 아문(衙門)의 「충익부(忠翊府)」를 두었다。

조선 관직 품계표(朝鮮官職品階表)(其二)

區分		상上 당堂 정일품 正一品	상上 당堂 종일품 從一品	상上 당堂 정이품 正二品	상上 당堂 종이품 從二品	상上 당堂 정삼품 正三品	하下 당堂 종삼품 從三品	하下 당堂 (정삼품) (正三品)	하下 당堂 종사품 從四品
동반 東班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 (議政) 상보국숭록대부 上輔國崇祿大夫 (국구-후기) (國舅-后期)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숭록대부 崇祿大夫 숭정대부 崇政大夫	정헌대부 正憲大夫 자헌대부 資憲大夫	가정대부(가의)-후개 嘉靖大夫(嘉義)-後改 가선대부 嘉善大夫	통정대부 通政大夫	중직대부 中直大夫 중훈대부 中訓大夫	통훈대부 通訓大夫	조산대부 朝散大夫 조봉대부 朝奉大夫
서반 西班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부인 貞夫人	정부인 貞夫人	숙부인 淑夫人	숙인 淑人	숙인 淑人	영인 令人
잡직 雜職	동반 東班								
	서반 西班								
토관직 土官直	동반 東班								
	서반 西班								

區分		상上 참參 정오품 正五品	상上 참參 종오품 從五品	상上 참參 정육품 正六品	상上 참參 종육품 從六品	하下 참參 정칠품 正七品	하下 참參 종칠품 從七品	하下 참參 정팔품 正八品	하下 참參 종팔품 從八品	하下 참參 정구품 正九品	하下 참參 종구품 從九品
동반 東班		통덕랑 通德郎	봉직랑 奉直郎	승의랑 承議郎	선교랑 宣敎郎	무공랑 務功郎	계공랑 啓功郎	통사랑 通仕郎	승사랑 承仕郎	종사랑 從仕郎	장사랑 將仕郎
서반 西班		과의교위 果毅校尉	현신교위 顯信校尉	돈용교위 敦勇校尉	여절교위 勵節校尉	적순부위 迪順副尉	분순부위 奮順副尉	승의부위 承義副尉	수의부위 修義副尉	효력부위 効力副尉	전력부위 展力副尉
외명부 外命婦③ (문무관처) (文武官妻)		공인 恭人	공인 恭人	의인 宜人	의인 宜人	안인 安人	안인 安人	단인 端人	단인 端人	유인 孺人	유인 孺人
잡직 雜職	동반 東班			공여직 共勵職	근효임 謹效任	봉무랑 奉務郎	승무랑 承務郎	면공랑 勉功郎	부공랑 赴功郎	전근랑 展勤郎	전근랑 展勤郎
	서반 西班			봉주교 奉主校	현공교 顯功校	등용부위 騰勇副尉	선용부위 宣勇副尉	맹건부위 猛健副尉	장건부위 壯健副尉	승력부위 承力副尉	근력부위 勤力副尉
토관직 土官直	동반 東班	통의랑 通義郎	봉의랑 奉義郎	선직랑 宣職郎	봉직랑 奉職郎	희공랑 熙功郎	주공랑 注功郎	공무랑 供務郎	직무랑 直務郎	계사랑 啓仕郎	시사랑 試仕郎
	서반 西班	건충도위 建忠徒尉	여충도위 勵忠徒尉	건신도위 建信徒尉	근신도위 勤信徒尉	돈의도위 敦義徒尉	수의도위 守義徒尉	분용도위 奮勇徒尉	효용도위 効勇徒尉	여력도위 勵力徒尉	탄력도위 彈力徒尉

참 고(參 考)

一、당상(堂上)＝정삼품상계(正三品上階)ㅣ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以上)

二、당하(堂下)＝정삼품하계(正三品下階)ㅣ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以下)

三、참상(叅上)＝종육품(從六品) 이상(以上)

四、참하(叅下)＝정칠품(正七品) 이하(以下)·참하(叅下)에서 참상(叅上)이 되는 것을 「출육(出六)」 또는 「승육(陞六)」

五、관직정무명칭(官職正武名稱ㅣ계(階)·사(司)·직(職))의 순서(順序)＝예(例)하면 영의정(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계階)、의정부(議政府)(사司)、영의정(領議政)(직職) 별항 참조(別項叅照)

六、행(行)＝계고직비(階高職卑)：예(例)하면 종일품계(從一品階)를 가진 이가 정이품직(正二品職)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승정대부 행 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

七、수(守)＝계비직고(階卑職高)：예(例)하면 종이품계(從二品階)를 가진 이가 정이품직(正二品職)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

八、관직(官職)의 임기(任期)＝「임만(任滿)」이라 하여 대개(大槪) 육품 이상(六品以上)은 구백일(九百日)、7품 이하(七品以下)는 사백오십일(四百五十日)、무록관(無祿官)은 삼백육십일(三百六十日)

단(但)、지방관(地方官)은 「조만(爪滿)」·「조한(爪限)」이라 하여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는 삼백육십일(三百六十日)(一年)、수령(守令)은 일천팔백일(一千八百日)(五年)、당상관(堂上官)과 미설가(未挈家) 수령(守令)은 구백일(九百日)(二年半) 병(兵)·수사(水使)와 우후(虞候)·평사(評事)는 칠백이십일(七百二十日)(二年)、미설가첨사(未挈家僉使)·만호(萬戶)는 구백일(九百日)을 원칙(原則)으로하나、후기(后期)에는 관찰사(觀察使)가 二十四삭(朔)、수령(守令)이 二十삭(朔) 또는 六十삭(朔)(三年窠와 六年窠의 구별(區別)이 있음) 등(等)으로 고쳐졌다。

※미설가(未挈家)＝가족(家族)을 두고 단신부임(單身赴任)함。

九、증시(贈諡)＝종친(宗親)과 문(文)·무관(武官) 실직(實職)으로 2품 이상(二品以上)의 고위층(高位層)은 그 사후(死後)에 증시(贈諡)(경국대전(經國大典))한다 하였고、그 뒤로 점차 범위(範圍)가 확대(擴大)되어 속대전(續大典)에는 대제학(大提學)과 유현(儒賢)·사절인(死節人) 표저자(表著者)는 정이품(正二品)이 못되더라도 증시(贈諡)를 특허(特許)한다 하였다。

十、증직(贈職)＝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死後)에 품직(品職)을 추증(追贈)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追贈)하는 것이 있고、그 밖에도 봉명출강(奉命出疆)하여 신몰이역(身沒異域)한 자(者)、기타(其他)에 추증(追贈)의 대상(對象)이 적지 않았다。(경국대전(經國大典))

※출강(出疆)＝외국여행(外國旅行)、신몰(身沒)＝사망(死亡)

十一、토관직(土官職)＝토관(土官)의 문직(文職)은 관찰사(觀察使)가、무직(武職)은 절도사(節度使)가 선발(選拔) 임명(任命)하는데、평안(平安)·함경양도(咸鏡兩道)에 한(限)하여 대개 토착(土着)의 사족(史屬)에서 뽑는 일이 많았다。오위(五衛)(오위(五衛)에 이르기까지의 경과(經過)와 구성(構成))「경국대전(經國大典)」